

[별표 3의3] <개정 2013.12.17>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18조의3제4항 관련)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가. 산림경영관리사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나.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 농막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다.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마. 별표 3 제1호 및 제6호의 시설 중 산지일시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2. 석재·지하자원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토양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가. 석재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제한없음	평균 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50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가.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설 및 궤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 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시설되는 진입로가 임도의 용도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 1)·2)의 조건·기준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진입로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경우

대상시설 · 행위	대상시설 ·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 · 행위의 조건 · 기준
가. 임도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 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산림경영과 관련된 궤도를 포함한다)		너비가 3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1) 배향곡선지 · 차량대피소 및 차를 돌리기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 2) 토석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 · 탐방로 · 등산로 · 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제한없음	너비가 1미터5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휴식 · 대피를 위한 장소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미터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5.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 · 행위	대상시설 ·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 · 행위의 조건 · 기준
현장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해당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방지시설 및 자재적치·운반시설	는 지역	
------------------	------	--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	산지전용·일시 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임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임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이고 재배면적이 3만㎡ 미만일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나. 관상수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7.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가. 산불감시탑·방화선·간이무선통신시설·간이저수조·간이헬기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제한없음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나.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다.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8. 그 밖의 경우

대상시설 · 행위	대상시설 ·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 · 행위의 조건 · 기준
가. 가축의 방목	준보전산지	제12조제13항제6호에 적합할 것
나. 물건의 적치		제12조제13항제9호에 적합할 것
다. 법 제26조에 따른 채석경 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시설	산지전용 · 일 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 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라. 농업용수 개발시설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5제곱미터 미만이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일 것
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제한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설수목장림의 설치 및 조성기준,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따른 사방사업타당성평가 기준 등에 적합할 것
사.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 · 식물의 보호시설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아. 문화재·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일 것
차.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제한 없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30㎡ 이하의 시설

※ 비고

1.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나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마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만 해당한다.
3.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의 설치 는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한다.
4.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5. 제1호·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제8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7.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